

#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 미국

### FTC, 향신료제조업자 의 차별대가에 대하여 동의심결

세계최대의 향신료제조업자인 McCormick사는 향신료 및 조미료 판매에 있어 가격차별을 함으로써 연방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였다고 한 FTC의 소추에 대해 화해하기로 동의하였다. FTC에 의하면 McCormick사는 몇몇의 소매업자에 대하여 상당 기간 경쟁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정찰가격(Net Price)을 부과한 것이 McCormick사는 경쟁사업자에 대해 제품의 표시 가격(List Price)보다 차별화된 가격 할인을 제시함으로써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가격할인은 업계에서 「거래 레이트」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가격 할인 할당과 유사한 형태의 현금선불, 무료상품, 전표외 가격할인, 현금 리베이트, 운전자금 등 기타 여러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심판 개시 결정서에 따르면, McCormick사에 의한 차별대가의 피해자를 McCormick에 대한 「천대 구입자」(disfavored purchasers)라고 칭하였는데 McCormick사가 「우대구입자」(favored purchasers)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가격 및 조건으로 동양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대체적 거래선은 아주 극소수였다.

로빈슨-페트만법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살 또는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업자는 경쟁관계에 있는 구입업자에 대하여 동종이면서 동 품질의 상품에 대해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 화해안에서 McCormick사가 법률상 인정된 항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 법에 위반하는 차별대가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하였다.

FTC 경쟁국장인 Richard Parker는 “본 심결은 시장지배적인 판매업자에 대하여, 구입업자가 당해 차별적 사업자와의 거래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는 가격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메릴랜드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McCormick사는 세계최대의 향신료 및 조미료 제조업자이며, 1988년 미

국에서만 6억 2,370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다. FTC 주장에 의하면, McCormick사는 거래처에 대해 향신료의 판매재고의 대부분을 자기에게서 할당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요구가 슈퍼마켓 향신료재고의 90%에 미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 향신료 군을 시장에서는 McCormick사가 압도적으로 리드하고 있어 국내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McCormick사는 오직 1개의 전국적 사업자인 Burns philp food와 몇몇의 극히 소규모 지방업자들과 판매경쟁에 직면해 있을 뿐이다.

상기 심결안은 즉시 관보에 공표되고 4월 7일까지 30일간 Public Comment에 첨부된 후, FTC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2000. 3. 8, FTC 발표

### 경쟁정책당국, 합병심사에 관한 Second Request 절차를 개정

2000년 4월 5일, FTC와 법무부는 합병 절차에 있어 Second

Request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절차와 방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Hart-Scott-Rodino법에 따른 합병사전심사에 있어 FTC에 의해 요구되는 Second Request에 대한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채택된 절차는 합병사전심사를 업계와 당국 직원 모두가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국이 행하고 있는 계속적인 노력중의 하나이다.

Robert Pitofsky 위원장은 “새로운 절차는 부족한 FTC의 자원을 보호하고 또한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다. 우리는 상·하 양원의 사법위원회, 특히 의장인 Hatch와 Hyde 씨의 이러한 방침에의 공헌과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Hart-Scott-Rodino법은 일정기준에 합치하는 합병 당사회사에 대하여 FTC 및 법무부에 합병 전에 정보를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당국은 합병계획이 경쟁을 저해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소수의 합병계획에 대하여 당국은 당사자의 당초의 신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서류와 추가정보를 요구(Second Request)할 수 있다.

FTC는 즉시 발효하게 되는 4개의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① 모든 Second Request는 Second Request가 발해지기 전에 경쟁국의 상급간부에 의해 심사된다. 경쟁국의 관여기회를 증대하는 것은 Second Request의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행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② 경쟁국 직원은 Second

Request를 발한 후 즉시 당해 합병 계획에서 생기는 경쟁상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하기 위한 회합을 소집할 수 있다. 이 회합은 당사자가 더 늦은 날짜로의 기간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한, Second Request의 요구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한다.

③ 경쟁국 직원은 Second Request 수정에 대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직원이 즉시 회답을 함으로써 방향이 보다 잘 정립된 기록의 탐색이 가능하게 된다.

④ 당사자는 직원과의 회합에서 해결을 얻지 못한 Second Request의 수정문제의 해결을 위원회의 법률자문에 의뢰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절차는 신고에서 결정까지 10일 이내의 단기간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

Pitofsky 위원장은 “법률자문은 변호사의 신뢰와 위원회의 권위, 이 둘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는 자원(resource)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몇몇의 다른 방침이 집행 중에 있다. FTC는 직원의 합병사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련의 「최선의 행동요령」을 개발하고 있다. FTC는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심사에 대하여 장점과 단점을 점검하고 이러한 합병심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를 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경쟁국은 Second Request의 절차를 보다 효율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직원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FTC는 합병의 사전심사절차와 관련된 직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경쟁을 저해함이 없이 합병사전심사의 시간, 노력, 비용을 감축하기 위하여 추가적 조치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TC 경쟁국은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공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 2000. 4. 5, FTC 발표

### 법무부·FTC, 경쟁업자간의 공동행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지난 4월 7일 FTC와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경쟁업자간의 공동행위에 관한 반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것은 joint venture, 전략적 제휴, 기타의 경쟁업자간의 공동행위를 포함, 경쟁업자간의 폭넓은 범위의 수평적 협정에 대해 연방반트러스트 당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둘 이상의 경쟁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한 반트러스트 소추가 행해질 가능성과 평가함에 있어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분석적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제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경쟁압력으로 인해 기업은 해외시장에로의 확대, 높은 개발노력에 따른 자금조달, 제조 및 기타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잡한 공동행위에의 충동에 내몰리게 된다. 경쟁업자간에 의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반트러스트

법상의 이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다. 작년 10월에 FTC는 법무부 반트러스트국과 협의하여, 산업계 및 소비자 그리고 실무자의 제언과 조언을 얻기 위해 원안의 형태로 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관계자는 2000년 2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Pitofsky 위원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행위 증대라는 특징적 사업환경에 대해 건전한 분석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경쟁업자와 공동행위의 반트러스트법상의 의미를 산업계가 평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로써 경쟁촉진적인 공동행위를 조장하고 경쟁 및 소비자를 해하는 공동행위를 억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려깊은 지원과 코멘트를 제공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가이드라인의 발행은 5대 0으로 결되었고, Mozelle W. Thompson과 Thomas B. Leary 위원은 개별 의견을 발표했다.

Thompson 위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책정으로 전략적인 공동행위에 대한 분석방법의 전체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점차 역동적으로 변동하고 있는 시장에 대응하는 점에서 중요한 전진이라고 믿기 때문에 본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FTC와 법무부가 이러한 공동행위와 관련해 반트러스트상의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이다. 물론 어떠한 가

인드라인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Leary 위원은 “이 가이드라인의 모든 내용에 반드시 찬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견해차이보다도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일단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반트러스트법 준수의 제일선에 있는 사기업의 변호사는 반트러스트국 당국의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유익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2000. 4. 7, FTC 발표

### 미 법무부, CBS – Viacom 기업결합 저지하지 않기로

미국 법무부는 4월 26일 CBS사와 Viacom사간의 기업결합 제안을 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두 기업의 초대형 방송사간 결합은 더욱 완성에 가까워졌다. 법무부 대변인인 Gina Talamona는 법무부의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후 “제안된 당해 기업결합은 반트러스트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고 말하였다.

당해 기업결합은 아직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관련 기업들은 성명을 통해 자신들은 FCC의 인가를 얻자마자 최초에 360억 달러로 평가된 당해 기업결합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5인의 FCC 위원들은 현재 연방규칙 준수를 위해 필요한 일정자산의 매각을 조건으로 하여 Viacom사의 CBS사 취득을 인가하라는 FCC 조사관들의 권고를 검토중이다. 이 관련 규칙은 1개사가 자사 소유의 TV 방송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미 전역 시청자의 수를 35%로 제한하고 있다. 두 기업간의 결합이 완성될 경우 이를 기업은 41%의 미 전역 시청자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관련 기업들은 FCC 규칙 준수를 위해 2년의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FCC 조사관들은 이보다는 짧은 시간을 허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FCC 규칙은 또한 한 방송사가 2개 방송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결합 후 운영될 기업에게는 골치아픈 문제로서, 이 기업은 CBS 및 UPN 네트워크 모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해 규칙은 현재 FCC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이 UPN을 매각하여야 할 시점 이전에 완화될 수도 있다.

Viacom사의 회장인 Summer Redstone은 관련 기업들이 UPN의 계속 보유 전망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Viacom-CBS 기업결합에서 당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UPN의 존속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dstone 회장은 전미방송인협회 회의에서 “UPN의 사멸을 보장하게 될 정부측 주장은 없는데, UPN의 사멸은 우리가 동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를 보유한다면 동 네트

워크는 성공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또한 4월 26일, MTV 유선방송 채널과 Blockbuster 비디오 체인을 소유하고 있는 Viacom사는 최근 회계 4분기에서의 순이익 증가를 발표하였다.

■ 2000. 4. 26, The New York Times

### 미 법무부,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조사

인터넷에 판매대상으로 등재된 주택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Homestore.com Inc.는 금주에 법무부가 동 업체의 영업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동 기업은 당해 요구가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에 의한 것이며 자사의 영업 및 동 영업이 미국 내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와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는 아직 법률위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고 동업체는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은 특별히 Homestore.com을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법무부가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에 있어 잠재적인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동 산업 담당 공무원들은 동 기업의 전미부동산중개업자협회와의 계약 및 지방 부동산중개업 단체들과의 배타적 협정이 다른 기업들을 온라인 부동산중개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여 왔

다.

Homestore.com의 인터넷 사이트인 www.Realtor.com은 인터넷에 판매대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147만개 주택의 90%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경쟁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로는 www.Homebuilder.com 및 www.SpringStreet.com이 있다.

공인된 이 점에도 불구하고 Homestore.com은 아직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다.

■ 2000. 4. 28, The New York Times

### 미 법무부, Alcoa-Reynolds 기업결합 인가

미국 법무부는 50억 달러 규모인 Alcoa Inc.의 Reynolds Metals Co. 취득에 대하여 Alcoa사가 Reynolds사의 텍사스 소재 제련소, 그리고 호주의 최첨단 제련소에 대한 Reynolds사의 지배적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후 5월 3일 동 취득을 인가하였다. 미국 최대의 두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의 결합이 제기한 반트러스트 우려는 알루미늄 및 기타 제품에 사용되는 가루인 알루미나를 생산하는 이들 두 제련소의 매각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유럽 위원회가 5월 3일 오전에 요구한 자산매각과 더불어, 법무부와 이들 기업 간의 합의는 Alcoa사로 하여금 Reynolds사가 보유하고 있는 알루미나 제조시설 모두를 매각하도록 하

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 반트러스트당국의 인기가 있자, 이를 기업은 5월 3일 자산들간의 기업결합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Reynolds사의 주주들은 이를 2월 11일 승인한 바 있었다. Reynolds사의 현 주식은 1주당 Alcoa사의 보통주 1.06으로 전환될 것이다.

Alcoa사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인 Alain Belda는 “우리는 Reynolds사를 급속히 통합시켜 Alcoa사 및 Reynolds사의 고객들,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추가적인 가치를 창조할 것이다. 대상자산 매각의 수익은 Alcoa사의 수익성 있는 추가적 성장을 위한 투자에 공헌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츠버그에 본사를 두고 있는 Alcoa사는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제조업체로서 1999년의 수입은 160억 달러 이상에 달하였다. 버지니아주 Richmond에 소재하고 있는 Reynolds사는 미국 2위의 알루미늄 제조업체이며 세계 3위이고, 1999년 수입은 46억 달러 이상이었다.

정부는 원래대로의 기업결합을 저지하기 위해 뉴욕 주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시에 당해 소송을 화해시킬 이번 합의도 접수시켰다. 이 합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소장에서 법무부는 원래대로의 취득은 두 등급의 알루미나의 정련 및 판매에서의 경쟁을 상당히 감소시켜, 알루미늄 제조업체 및 알루미나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포함한 고객들에게 제품가격의 인상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당해 합의에 따르면 Alcoa사는 호주 서부의 Darling Range에 위치하고 있는 Reynolds사의 대단위 제련소인 Worsley 제련소의 지배적 지분을 매각하게 될 것이다. Worsley 제련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알루미나를 생산하는 제련소 중 하나이다.

당해 합의는 또한 두 등급의 알루미나를 생산하며 텍사스 주 Corpus Christi에 소재한 Reynolds사 제련소의 매각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매각이 없다면 Alcoa사는 용광로등급 알루미나 세계시장의 38%를, 그리고 화합물등급 알루미나 북미시장의 59%를 소유 내지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하였다.

한편 5월 3일, 유럽위원회는 이들 기업에 대하여 독일 Stade에 소재한 Reynolds사의 제련사업의 매각을 포함하여 자산매각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법무부와 유럽위원회 반트러스트당국은 자신들의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조사시에 광범위하게 상호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는 반트러스트 기관간의 국제적 협력이 어떻게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조화로운 해결책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훌륭한 실례이다”라고 Klein 국장은 말하였다.

관련 기업들은 반트러스트 집행당국과의 합의로 인해 워싱턴 주 Longview에 소재한 Reynolds사의 알루미늄 제련소의 25% 지분매각도 또한 요구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2000. 5. 3, The New York Times

### 미 FTC, 음반회사들과 CD 판매 관련 반트러스트 소송에서 화해

미국 연방정부는 5월 10일 미국 5대 음반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2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화해하였는데, 이 소송은 CD가격을 크게 인상시켜 지난 4년간 소비자들에게 5억 달러 이상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법한 마케팅협정을 적발한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인 Robert Pitofsky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화해로 인해 CD가격이 상당히 인하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비용절감폭은 월당 최고 1,700만 달러, 즉 CD 1개당 2달러 내지 5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FTC가 연방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였다고 한 당해 마케팅협정은 다수의 대·소형 소매업체들과 CD 시장의 85%를 공급하는 5개 음반회사들 간에 체결된 것이었다. Pitofsky는 최저 홍보가격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당해 협정은 1990년대 초반 Circuit City, 월마트, Best Buy 및 Target과 같은 할인업체들에 의해 개시되었던 가격전쟁을 끝내기 위한 제조업체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고 하였다. 음반회사들과 소매업체들간의 당해 협정은 음반판매점들이 신문, TV, 심지어는 점포에 붙이는 포스터에서조차도 CD 가격할인을 홍보하는 것을 금하였다. 이러한 약속의 대가로 음반회사들은 CD 홍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산업계 전반에 걸친 수직적 가격고정이었다”라고 Pitofsky는 말하였으며, 당해 사건은 클린턴 행정부와 1980년대의 반트러스트 집행상 차이점에 대한 고전적인 예증이라고 하였는데, 1980년대에 레이건 행정부 관리들은 반트러스트법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1980년대에는 소매가격유지협정은 한번도 제소되지 않았었다.”

당해 사건에서 화해한 회사들은 타임 워너 사, 소니 미국 법인, Bertelsman Music Group, EMI 음반유통회사, 유니버설 음반·비디오 유통회사였다. 이들은 모두 당해 마케팅협정이 위법이라는 것을 부인하여 왔었다.

이번 조사를 화해로 종료시키는 당해 동의명령은 이러한 마케팅협정을 금지하였으나 어떠한 금전적 이익환수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다양한 사소(私訴)가 이들 음반회사를 상대로 제기되었었다.

■ 2000. 5. 10, The New York Times

### 제지회사들간의 기업 결합, 미 반트러스트 당국의 인가받아

International Paper사가 경쟁업체인 Champion International사를 73억 달러에 취득하려는 제안이 미국 법무부 반트러스트 당국의 인가를 받았다고 International Paper사가 5

월 18일 밝혔다.

현재 당국들이 당해 제안을 검토중인 캐나다와 브라질에서도 인가가 예상된다고 International Paper사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인 John Dillon은 말하였다. International Paper사는 다음달에 취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뉴욕주 Purchase에 소재하고 있는 International Paper사는 세계 최대의 제지업체로서 246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99,00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커넥티컷 주 Stamford에 소재하고 있는 Champion사는 수입이 53억 달러이며 18,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Champion사 취득을 위해 73억 달러 규모의 현금과 주식을 지불하는 외에, International Paper사는 또한 23억 달러 규모의 Champion사 채무인수에도 합의하였다.

Champion사는 핀란드 제지회사인 UPM-Kymmene사로부터 인수제안을 받았었는데, 동 기업은 처음에 66억 달러의 주식양도를 제안하였으나 투자자들은 당해 인수가격을 50억 달러로 낮추었다. 인수제안가격을 67억 달러의 현금지급으로 높이기도 했지만 UPM-Kymmene사는 결국 지난 5월 12일 인수경쟁을 포기하였는데, 동 기업은 International Paper사의 기습적인 인수제안과 경쟁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Brown Brothers Harriman사의 분석가인 Kathryn McAuley는 International Paper사의 인수제안은 “매우 공정한 거래”이며, UPM-

Kymmene사의 인수제안은 “Champion사와 같이 높은 가치를 지닌 기업에 대한 것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분석가들은 당해 취득은 두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이 취득은 내년말까지 4억 2,500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2000. 5. 18, The New York Times

### 미 연방지방법원, MS사에 대해 2개사로 분할할 것을 명령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잭슨판사는 6월 7일 독점금지법 위반판결을 받은 MS사에 대해 향후 독점행위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로 2개사로 분할하는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잭슨판사가 MS사에 대해 내린 명령의 주요 내용이다.

- MS사는 늦어도 이 판결 이후 4개월 이내에 법원과 원고인 주정부에게 분할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와 주정부는 분할계획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획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반대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MS사는 주정부의 반대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법원이 제안한 최종 분할안의 승인에 따라 MS사는 이 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 이 계획안이 달성되면 ① MS사는 윈도우 운영체계와 오피스 응용소

프트웨어 2개 부문으로 분할되며, ② 분할시 인력과 지적재산권 등 유형무형의 자산에 대한 완전한 이전분리, ③ 12개월 이내의 분할 완료, ④ MS사 타기업과의 계약시 배타적 조항 삽입금지, ⑤ PC업체에 대해 단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윈도사용권 부여, ⑥ 윈도적용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해 기술정보 제공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잭슨판사는 판결문에서 MS사는 상급법원에의 항소절차가 완결될 때까지는 현재의 회사체제와 모든 MS사 제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최종판결이 있기까지 MS사는 1998년 5월 18일 법무부와 19개 주정부에 의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당한 후 1999년 11월 5일 연방지방법원 사실인정에서 MS사 독점법 위반 예비판결, 2000년 4월 3일 법원이 MS사에 대해 셔먼법 제1조와 제2조 위반으로 독점법 위반판결, 그리고 2000년 6월 7일 법원에 의해 회사를 2개사로 분할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 2000. 6. 8, 워싱턴 리포트

### E U

### EU, MCI/Sprint 기업 결합에 대해 반트레스 트 이의성명서 발송

유럽위원회는 4월 26일 미국 통신 대기업인 MCI WorldCom Inc.에 대해 동 기업이 1,150억 달러 규모인 Sprint Corp.와의 기업결합의 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독자적 인터넷 중추 사업부문인 UUNET을 매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MCI WorldCom사와 Sprint사는 이미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당국의 인가를 얻기 위해 Sprint사의 인터넷 중추 사업부문을 매각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MCI WorldCom사는 UUNET의 매각은 논의 밖이라고 하고 있다.

EU 경쟁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티는 자신이 이들의 기업결합과 관련된 잠재적 경쟁상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의성명서를 관련 기업들에게 “수일 내로” 발송할 것이라고 하였다. 위원회측 한 소식통은 몬티 위원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며, “우리는 UUNET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이 사업부문을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하였다. 동 소식통은 EU 반트러스트당국은 새로이 탄생하는 회사가 인터넷 중추 시장에서 완전히 지배적이 되지 않도록 자산매각을 강제하기로 결심한 상태라고 하였는데, 동 시장에서 MCI WorldCom사는 1위 업체이며 Sprint사는 2위 업체이다.

동 위원회는 1998년 MCI와 WorldCom사와의 기업결합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MCI사로 하여금 인터넷 중추사업부문을 매각하도록 하였

다. 그 이후 동 기업의 경쟁업체들은 당해 자산매각이 건전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왔다. 지난 3월 MCI WorldCom사는 동 기업이 Cable & Wireless사에 당해 인터넷 사업부문을 매각할 때 약속한 것들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Cable & Wireless사의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2억 달러를 지불하였다.

몬티 위원은 동 위원회의 조사 결과 최고 수준의 인터넷 접속 및 다국적기업에 의한 전세계적 통신서비스 제공 시장에서의 경쟁 감소에 관한 동 위원회의 초기의 우려가 확증되었다며, 기자설명회에서 “우리의 조사는 이러한 우려를 확증하였다. 우리는 수 일 내로 이의성명서를 발송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몬티 위원은 유럽위원회는 미국측을 수신자로 하는 음성 전화 경쟁 감소의 우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당해 조사를 이 기업결합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중인 미국 법무부에 맡길 것이라고 하였다.

관련 기업들은 이제 심리를 청구할 선택권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들은 당해 기업결합 인가를 지지하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저지하는 일은 드물지만 종종 이를 인가하는 조건으로 양보를 요구하는데, 통상적으로 자산매각이 요구된다. 동 위원회는 7월 12일 이전까지 MCI WorldCom/Sprint 기업결합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2000. 4. 26, The New York Times

### 유럽위원회, 닌텐도사를 경쟁법 위반으로 조사

유럽위원회는 4월 28일, 유럽연합(EU) 게임관련상품의 유통에서 카르텔 유사행위가 있다고 하여 닌텐도사(본사 교토시)와 동 회사제품의 수입판매업체 7개사를 경쟁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한다고 발표하였다. 유럽위원회는 판매업체에 담당국을 할당하여 유통을 독점시키는 수법이 「인위적 가격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영국 및 이탈리아, 북유럽 제국 등에서 닌텐도사 제품의 수입업체로 되어 있는 7개사는 각각의 담당국에 대하여 병행수입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유통을 방해하고 있으며, 닌텐도사는 소매점간 가격경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정책 담당인 몬티 위원은 “EU 내의 가정이 게임상품에 소비하는 금액은 막대하여, 카르텔 혐의는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닌텐도사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에서는 스스로 수입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나, 영국 등 다른 EU 회원국에서는 특정한 수입업체에 유통을 맡기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1995년 소매점 등의 정보를 기초로 닌텐도사의 유통시스템의 조사에 들어가 최근 위반혐의를 통보한 것이다. 닌텐도측은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반론하여야 하며 그 후 구두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에 이어 유럽위원회가 벌금 등의 결론을 내리

게 된다.

닌텐도사는 1996년 일본의 경쟁회사 2개사와 함께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둘러싼 독점법 위반혐의가 문제된 적이 있으나, 유통을 둘러싼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위원회가 지적한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닌텐도 유럽현지법인의 홍보담당창구(런던)는 “닌텐도사는 자회사 및 유통업체가 EU시장의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왔다. 지금까지 유럽위원회에 협력하여 왔으며 경쟁법 절차의 초기종결에 노력하겠다”고 논평을 내었다.

■ 2000. 4. 29, 아사히신문

### 유럽위원회, Glaxo-SmithKline 기업결합 인가

유럽위원회는 Glaxo Wellcome 사와 SmithKline Beecham사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이들이 유럽연합 내 매출액이 5,000만 파운드(7,650만 달러)에 달하는 중첩되는 제품생산시설을 막각하는 조건으로 이를 인가하였다.

당해 기업결합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인가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매출액 규모로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Pfizer사는 현재 WarnerLambert사 인수를 추진중인데, 시가총액상으로는 동 기업이 Glaxo-SK보다 크게 될 것이다. 이들 기업은 통합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당해 기업결합은

금년 여름에 완료될 것이라고 하였다.

Glaxo SmithKline사가 유럽경제 지역 - 유럽연합 국가들 및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 에서의 판매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우려할 만한 유일한 점은 만일 경쟁제품들이 출시되지 못할 경우 동 기업은 흡연자 기침 치료에 사용되는 약품인 Ariflo를 외부기업에 라이센스하도록 한 의의의 규정이다. 적어도 다른 3개 기업이 유사한 약품을 개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전혀 실현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은 규정이다.

현재 만성 기관지 폐색증 치료용으로 최종단계 시험을 거치고 있는 Ariflo는 SmithKline Beecham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분석가들은 이 시장에 대해 SmithKline Beecham사가 경험이 없음을 고려할 때 대략 최고 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추정하였다. 그러나 당해 약품은 Glaxo사의 천식 분야에서의 강점을 고려할 때 이보다는 더욱 잘 팔릴 것이며, 이것이 유럽위원회가 우려하는 이유이다. 관련 기업들은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였으며, 이는 “Glaxo SmithKline사의 탄생을 향한 주요한 초석”이라고 하였다.

FTC의 인가는 몇주 내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후 당해 기업결합은 고등법원 및 7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주총회에서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이 탄생하는 기업은 Glaxo사의 회장인 Richard Sykes경이 회장직을 맡을 것이며 SmithKline Beecham사의 최고경영자인 Jean-Pierre Garnier가 새로운 기업의 최

고경영자가 될 것이다.

■ 2000. 5. 8, Financial Times

### 독일

#### 독일 연방카르텔청, 제재금의 감면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지난 4월 17일,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hard-core 카르텔(경성카르텔) 참가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연방카르텔청을 방문하여 위법한 협정을 접발하는데 주요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한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가이드라인 (leniency programme)을 발표하였다. Ulf Boge 연방카르텔청 장관은 “우리는 카르텔 참가자에 대해 카르텔로부터 이탈하는 인센티브를 좀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고발을 촉진한다”고 언급했다. hard-core 카르텔 특히, 시장분할뿐만 아니라 판매가격과 수량을 설정하는 기업간의 협정은 중대한 경쟁제한행위이며,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카르텔당국은 이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카르텔 참가자와 관계자로부터의 정보는 카르텔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된다. 반경쟁적 행위를 중지하고 그리고 당국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원하는 카르텔 참가자는 자신이 직면한 제재금 때문에 일을 단념하게 된다. 여기에 감면조치의 존재의의가 있

으며, 이로써 일정조건하에서 카르텔로부터 이탈한 기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재금을 면제시킬 수 있다.

통상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정보제공자가 카르텔을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최초의 자가 되는 경우에 어떠한 제재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Boge 장관은 “우리에게 최초로 접촉하는 기업에 대하여 완전히 제재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우리는 카르텔 참가자가 카르텔로부터 탈퇴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경쟁하는 것을 촉진하는데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면책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카르텔 참가자는 자기가 이용 가능한 모든 필요한 정보, 증거, 서류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연방카르텔청에 협력하여야 한다. 덧붙여 당해 카르텔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던 자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늦어도 당해 카르텔의 참가자에 대한 서면소추가 송달됐을 때에는 연방카르텔청의 요청에 응하여 당해 카르텔로부터 탈퇴하여야 한다.

같은 조건에 있어 연방카르텔청에 협력한 카르텔 참가자에 대한 제재금은 최저 50%로 감액된다. 정보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기타의 항목이 카르텔을 발견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것에 대하여도 제재금의 감액이 고려된다. 이 leniency programme은 기업 및 종업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카르텔에 의해 손해를 받은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본 풍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가능하다.

이 leniency programme은 유럽 및 미국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며 법개정까지는 필요없이 현행 행

정상의 제재금제도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다. 연방카르텔청은 이미 이 제도를 주로 보다 체계화 된 당국의 법운용 관행과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을 신고한 카르텔 참가자에 대해서 제재금을 감액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게 된다. Boge 장관은 “이 leniency programme은 어느 정도는 기업에 대해 우리측이 자기에게 부과한 약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연방카르텔청은 가격카르텔을 행했다는 의심이 있는 제지도매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합계 20여개 소 및 시설에 대한 최근 일련의 전국적인 입회 검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이 leniency programme을 적용할 예정이다.

- 2000. 4. 19. 독일 연방카르텔청 발표

## 일 본

### 공취위, 홋카이도 297개사에 배제권고

홋카이도 도청발주 농업토목공사의 입찰을 둘러싼 담합사건에서 공정취인위원회는 5월 15일 오전,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을 이유로, 입찰에 참가한 홋카이도 내의 업체 297개사에 대하여 배제권고를 행하였다. 동시에 담합을 주도하여 온 도청과 업체들이 가입하고 있는 아사히카와(旭川) 농업토목협회, 아사히카

와 측량설계업협회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요청하였다. 한번에 약 300개사나 되는 기업에 배제권고가 행하여진 것은 전례가 없다. 과징금은 약 18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취위에 따르면, 담합이 반복되어온 것은 도 농정부가 아사히카와시 등을 관할하는 가미카와(上川) 지청을 통해 발주한 관개배수 정리사업 및 밭지대 정비사업 등의 농업토목공사와 측량, 지질조사 등에서이다. 적어도 작년까지의 3년간 수주액은 총액 약 600억엔에 달하였다.

작년 10월의 현장조사와 그 후의 조사 결과, 도 농정부가 가미카와 지청에 수주실적을 고려하여 각 공사의 낙찰업체와 입찰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지시하고, 가미카와 지청은 두 협회를 통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업체측에 전달하였다는 것 등이 밝혀졌다.

한편 공취위 도사무소는 이날 사나다 준이치(眞田俊一) 부지사에 대하여 공정한 입찰을 확보할 것, 입찰시의 정보누출을 없애도록 감독체제를 재검토할 것 등의 재발방지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도는 앞으로 상별위원회를 열어 관계직원의 처분을 검토할 것이다.

아사히카와 농업토목협회의 아라이 히로시(荒井宏) 회장은 “(협회로서) 세미나를 열어 입찰방법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싶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나, 담합을 방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아사히카와 측량설계업협회의 사쿠라바 케이이치(櫻庭慶一) 회장은 “담합의 지적에 대하여 반론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000. 5. 15. 요미우리신문